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39호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자	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	제출연월일	2019.09.04.
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심경석

I. 제안내용

1.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간개방 화장실 지정 조건을 완화하고, 개방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조건 완화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12조)
- 나. 주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한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지급),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나. 예산조치 : 구비 확보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19. 7.18. ~ 2019. 8.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 평가 : 감사담당관 의뢰 결과 개선의견 없음
- 4) 성별영향 평가 : 여성보육과 의뢰 결과 개선의견 없음

II. 검토 의견

1. 개정 배경

-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사회’와 연계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개선 사업을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민간개방화장실 중 남녀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화장실별 별도의 출입구로 분리할 수 있도록 1개소당 최대 10,000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공사비의 50%를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원(국비 25%, 구비 25%)함.
 - ※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예산 확보(10,000천원)
(서초구 201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닥면적¹⁾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여 지정 할 수 있었으나, 2017.5.8일 개방화장실 지정 시 조례로 적용대상

1)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발체)

건축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이 개정되었음(2018.1.1.일 시행).

2. 주요 내용 검토

1)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 완화(안 제12조 제1항 단서조항 신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
- 이는 2017.5.8.일 개정된 영 제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방화장실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부합되는 규정임.
- 아울러 남녀 화장실의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대다수 화장실은 건축물의 규모가 작은 소규모 건축물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개방화장실의 지정 요건 완화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 세부 내용 규정(안 제13조)

- 안 제13조의 제목을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으로 변경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편의위생용품등”에서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 및 편의위생용품 등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이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지급)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고, 특히 남녀화장실 구분, 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을 위하여 기존 공중화장실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 제13조 규정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규정으로서 남녀 화장실 분리 등을 위한 민간개방화장실의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Ⅲ. 참고자료

1. 관계법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단수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용수를 절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에 설치된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은 중수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사용하는 물은 「수도법」 또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 수질기준에 맞아야 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